

1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280호 1998. 7. 13

개 정 이 유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건설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반건설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가. 면허갱신일이 각각 다른 2종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면허갱신 신청시에 면허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업 면허도 일괄하여 갱신신청할 수 있도록 면허갱신 절차를 완화하고, 이 경우 면허유효기간은 면허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함.
- 나.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내용중 경력 임원을 삭제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무를 전담하는 대표자

1인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함.

- 다. 전문건설업자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시공능력공사 대상에서 제외함.
- 라. 일반건설업자에 관한 권한중 토목건축공사업자 및 산업설비공사업자와 건설기술자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 마.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 전문건설협회가 각각 시공능

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대한 건설협회가 일괄하여 시공능력을 공시 절차를 일원화 함.

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5종목)과 온돌 시공업을 난방시공업으로 통합하고 종목도 3개종목으로 단순화함.

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제5종(개정안의 난방시공업 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타인의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등록 기준으로 인정하고, 시설물유지관

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는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학력·경력에 의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도 포함되도록 하며, 온실설치 공사업의 면허기준중 기술능력에는 시설원예분야 기술자를 추가함.

아. 기능계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를 현행 1~2억원에서 2~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주택회보